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2024 연구비 감사사례집

2

0

2

4

목차

프롤로그	사례집 안내	3p
------	--------	----

1부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 사례

2024년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 지적사례	4p
타 기관 감사 등 지적 사례	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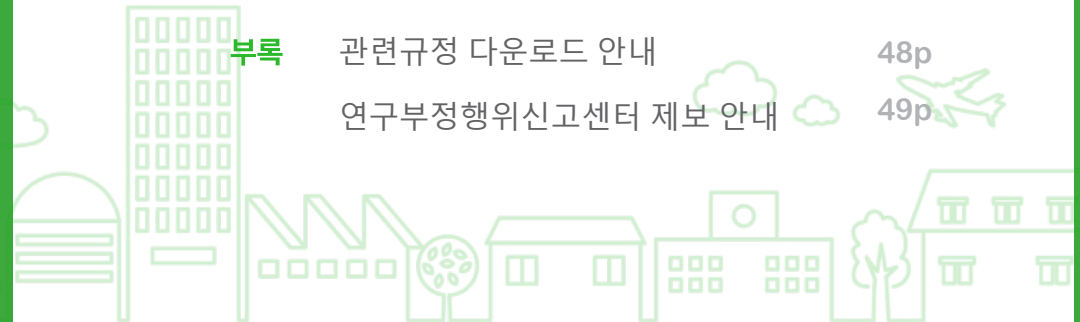
2부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안내

연구비 개요	20p
연구비 규정 안내	25p

3부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제재처분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29p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및 절차	37p

부록	관련규정 다운로드 안내	48p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제보 안내	49p



사례집안내

연구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연구자 및 행정 담당자 여러분이 연구비와 산학협력사업비를 보다 책임 있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24 연구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및 산학협력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대내·외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이 연구자 여러분의 연구비 관리 역량 강화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윤리 강화와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자 여러분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부처(기관), 사업 유형 및 수행 기간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연구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집은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cre.pusan.ac.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부



연구비감사 주요 지적 사례

정기감사

① 일상감사 미이행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건당 지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수리, 공사, 용역, 임차 등의 경우에는 일상감사(수시점검)를 거쳐야 하되, 다만 중앙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여 검수를 득한 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례

○○사업단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사(포럼) 대관을 위해 행사장을 임차(대관료 약 11,000천원)하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출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제6조(감사의 대상)

- ③ 수시점검은 직접비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앙구매 부서를 통하여 구매하여 검수를 득한 후 지출한 금액은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건당 지출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수리, 공사, 용역, 임차 등

② 출장경비(숙박비)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례

○○연구소는 세미나 개최를 위한 연사를 초청하면서 한 사람의 숙박비를 동일 날짜에 2개의 다른 숙박기관에서 각각 집행하여 실제 밤의 수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정기감사

③ 회의비 집행 부적정

「부산대학교 연구비카드 관리지침」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카드 사용은 연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종(유흥업, 위생업, 레저업, 사행업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이 제한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이러한 회의비 집행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집행 실무에서는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술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ex 이자카야, 호프집, 와인바 등)에서의 회의비 집행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례

○○연구소 및 연구책임자 ◆◆◆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호명이 술집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사업장(ex 호맥, 크래프트)에서 회의비를 집행함.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 장소 선정 시 회의비 집행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술집에서의 회의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관련 법령(규정)

■ 「부산대학교 연구비카드 관리지침」

제5조(연구비카드 사용)

- ④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종(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 위생업, 레저업, 사행업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승인이 제한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정기감사

④ 집행서류 구비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구비 청구 시 교육훈련비의 경우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수료증 등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야 함

☞ 사례

○○연구소는 연구책임자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메디테라피스트 2급 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수료증 등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수강료를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부산대학교 연구비관리 세부지침」【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인력 지원비】
2 계상(집행) 기준
2) 교육훈련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경비로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출

⑤ 예산집행 부적정(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22조 (간접비회계 관리) 제4항에 따르면,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정하고 있음

☞ 사례

○○연구소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근무한 직원 퇴직금 여충당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퇴직급여를 계상하여 적립하지 않고, 2023년 11월 16일 당해연도 회계연도에서 일괄 계상 후 집행함

📖 관련 법령(규정)

-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 제22조(간접비회계 관리) ④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정기감사

⑥ 계약서류 구비 부적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례

○○○○○○센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구매, 제조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렴계약서, 납입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에 대한 징구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함

📖 관련 법령(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상감사

✖ 2023년 1월 2일부터 연구비 전자결재 및 일상감사가 ERP 시스템을 통한 전자 결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건 중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이 잦았던 건의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를 안내 드립니다.

일상감사대상	증빙서류 및 확인 사항
건당 500만원 이상인 수리,공사,용역,임차 등	(증빙서류) . 승낙사항 또는 계약서 . 과업지시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카드결제 시 생략)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행(계약)보증증권 . 청렴이행서약서 (500만 원 이상) . 결과보고서 . 검사조서 . 거래명세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카드결제 시 생략)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5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공사)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관련면허 등 추가구비 /(임차)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임차기간 표시
20일 이상인 국내외 출장 여비	. 출장관련 증빙(학회포스터, 참가확인증, 기관초청서, 메일 등) . 여비산출내역서
1인당 5백만원 이상인 연구수당	. 소득구분확인(본 과제에서 집행 된 소득구분으로 지급) .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서 첨부

타 기관 감사

한국연구재단(2022년 종료과제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01 연구시설·장비비

☞ 지적사항

- 기관의 공용(또는 타 사업비로 공간을 마련한)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의 공용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 집행이 불가하며 공간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함

📄 관련 법령(규정)

- 제2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02 연구재료비

☞ 지적사항

- 연구단은 행사 전시 모형 제작 및 방문자를 위한 체험키트 제작 비용을 연구재료비(직접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연구단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관련 법령(규정)

-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 용도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나. 강연 ·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다. 홍보전문가 양성
 -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타 기관 감사

한국연구재단(2022년 종료과제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03 연구활동비

지적사항

- 참여연구자의 출장비를 중복하여 계상함(원소속기관과 타기관 연구과제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동일비용 2회 이상 중복 집행은 불가함**



관련 법령(규정)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희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04 연구활동비

지적사항

- 지출결의 제목과 실제 구매항목이 불일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에 따라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증명자료 입증이 필요함**



관련 법령(규정)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타 기관 감사

한국연구재단(2022년 종료과제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05 연구활동비

지적사항

- 내부 참석자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회의 참석 및 회의비를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관련 법령(규정)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06 연구활동비

지적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관련 법령(규정)

-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타 기관 감사

한국연구재단(2022년 종료과제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07 연구수당

지적사항

-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따라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관련 법령(규정)

-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08 보안수당

지적사항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를 초과하여 보안수당을 지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 및 매뉴얼에 따라 **보안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관련 법령(규정)

-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타 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례

01 직접비

항목	구분	지적사례
인건비 ·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 인건비 편취 및 부당집행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연구원들에게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 연구원 명의로 개설된 인건비 통장을 연구실 또는 연구책임자 다른 연구원이 취합하여 관리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하여 비참여연구원, 연구실 자체 행정직원 등의 인건비로 집행
	초과지급	• 고용계약서상 계약된 인건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월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타기관소속 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용역과제 제) 취업 등으로 타 기관의 급여를 받는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기타	• 자격증을 기업에 대여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격증 대여 시 기업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휴학·졸업생에게 학생 인건비 지급(감사원 감사) ※ (휴학생) 연구과제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인건비 지급 가능 ※ (학생연구자)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등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본교 소속 교원에게 외부인건비 지급 • 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자의 보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처리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 후 인건비를 회수하여 사용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배우자 등을 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 집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간접비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집행

타 기관 감사

항목	구분	지적사례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등재누락	- 연구용 장비·기기, 일반비품 등의 비소모품 및 도서 구입 후 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ERP)에 미등록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 기자재와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기자재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미등록 ※ 연구시설·장비의 유·유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정보망이 있으면 그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미비	- 물품, 공사, 용역의 이행 원료시 검수 누락 또는 검수 관련자 서명 누락 - 검수일자와 납품일자가 상이 - 검수 시 검사자(확인자)를 연구책임자로 하지 않음 - 계약서, 승낙사항, 견적서, 납품서(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세금 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 원본을 누락 또는 증빙서류에 날인 또는 일자를 누락
	부당집행	-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업체와 내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금을 돌려받음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 활동비	국내 출장 여비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여비를 본 근무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동일지역 장기체재(15일 초과)시 일비 감액을 미적용한 경우 - 출장 중 회의비를 연구비로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경우
	국외 출장 여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없거나, 계획서와 상이한 지역으로 해외출장 간 경우 - 항공(기내식) 또는 학회 등에서 식사·숙박이 제공되었는데도, 출장 여비에서 식비·숙박비를 감액하지 않고 이중 지급한 경우 - 연구과제와 무관한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또는 허위로 출장여비를 신청한 경우

타 기관 감사

항목	구분	지적사례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 상급자에게 출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장 시행 후, 출장신청서를 소급하여 제출하거나 사후 결재 받아 여비를 청구한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등 과다 지급 - 해외 출장 시 공무원외여행승인 공문 미제출, 해외 출장 후 입·출국 일자가 명시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미제출 - 학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팸플릿 등 증빙서류 누락
	기타 여비	- 연구비와 간접비 또는 대학회계에서 여비를 이중으로 정산·지급 - 안식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시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고, 연구책임자로서 업무 수행한 경우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연구기간이 아닌 기간(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사용한 공공요금을 집행 - 당월 사용금액이 다음 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의 경우 연구시작 이전 한 달 동안의 사용금액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록비)	개인(학회 평의원 회비 등)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및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 단계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및 참가비 등)를 집행한 경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등이 기록된 전문가 활용 내역서 없이 전문가 활용비 지급 -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자문을 실시하면서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자문을 하고 전문가 활용내역서를 각각 제출하여 자문료를 중복으로 청구
	회의비 및 식대	-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장간 자를 회의 참석자로 기재 - 동일인이 같은 시간대에 이중으로 회의 참석 - 회의록 내용(회의일시, 금액, 참석자 등)과 증빙서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회의록·카드매출전표 없이 회의비를 집행 - 회의록에 매번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등 회의 내용을 불성실하게 기재 - 주말 및 공휴일에 회의 개최 시 사유서 미제출

타 기관 감사

항목	구분	지적사례
연구 활동비	회의비 및 식대	- 주류 등 유해성 경비를 집행 - 식사 후 커피숍 등에서 커피·아이스크림·빵 등의 후식 집행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 집행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식대(특근매식비) 집행 - 회의비, 식대 지급 기준 단가를 초과하여 지출 ※ 기준 단가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 기준에 따름 - 출장기간 내에 출장여비(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와 회의비를 이중으로 청구·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식대(특근매식비) 집행 - 심야시간(23시~06시)에 사용한 회의비를 집행
연구수당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 ※ 단,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개인별 평가서의 개인별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한 경우 - 연구수당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타 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례

02 간접비

구분	지적사례
인건비	- 연구 수행기관 소속 기금교수로 임용하여 간접비로 급여 지급 ※ 간접비의 인력지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이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에게 사용해야 함 - 총장의 사전 결의허가 없이 조교를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연구수당을 지급 - 소속직원의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구소 간접비에서 지급 - 직원 채용 시 지급 근거(근로계약서 등) 없이 채용·인건비 지급
연구 개발능력 성 과금	연구개발능력성과금을 승인액보다 초과하여 지급 ※ 해당년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긍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함(간접비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및 과제별 간접비 수입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
운영비	《교육훈련비》 - 국외연수의 연수경비를 정산하면서 '인솔책임자의 확인서' 없이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00여행사에 연수경비를 지급함 ※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 : 연수경비는 연수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서가 첨부된 여행사의 청구를 통해 지급해야 함 《특근매식비》 - 행정직원 초과근무 수당 및 특근매식비 집행 시 초과근무 결재 및 초과근무 내역서 없이 집행한 경우 《여비교통비》 - 회계연도가 다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세금·공과금》 - 개인소득세, 통신요금,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 등 사적인 용도의 공공요금 집행 - 각종 공과금 납부 지체로 인한 연체료 집행 - 전문가활동비(자로보, 강의료), 연구수당 등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지급 《지급수수료》 - 인지세 납부대상인 공사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미첨부하여 인지세 징수 누락 《업무추진비/회의비》 - 여비 중 일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지 교통비(택시비, 주차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타 기관 감사

구분	지적사례
	-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 없이 회의비·업무추진비 집행 -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회의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소속성명 포함)과 서명을 미첨부하여 집행 - 수당을 현금 지급하면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수령자 확인·서명 포함)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공휴일, 휴일, 명절 등에 회의비 집행 ※ 회의비 등의 휴일 집행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의 식대로 지출 요구한 후, 해당 일에 식사를 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상품권 구매 - 회의종료 후 식대를 바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일이 경과한 후 결제 - 회의록을 부정적 또는 부정확하게 작성 -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을 부정확하게 작성 또는 미작성 - 참석자 명단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자를 기재 - 동일인이 같은 시간대에 이중으로 회의에 참석 -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출장 중인 자가 회의에 참석 - 회의록과 신용카드 영수증 상의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불일치
결제 관련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거나, 지출 이후에 지출결의서를 일괄 작성한 경우 -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사무용품 구입비, 세품 수리비 등을 복리후생비에서 집행 - 모든 지출 건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와 같은 단일 과목에서 일괄 집행함 - 산학협력단회계 예산편성 기준단가 초과 집행 ※ 1인당 한도 : 회의비 3만원, 특근대식비 1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비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로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연구비(간접비) 지불 확인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 및 현금을 사용한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인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아 현금으로 대금 결제 - 동일업체에서 여러 건의 물품을 다른 날짜에 각각 구매 후, 대금을 일괄 지급 - 연구비 실지출금액과 증빙서류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연하여 지출한 경우

타 기관 감사

구분	지적사례
	-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항공권, 논문게재료 영수증 또는 입금증, 학회참가비 영수증, 회의비 결제 영수증, 공공요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없이 연구비 집행 - 연구소 및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의 경비 집행
기타	- 산학협력단 회계 미 편성 - 수입금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 - 수입금을 간접비 집행계좌에 입금하여 예산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간접비 정산에 따른 일부 반환금 및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 ※ 간접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여야 함 ※ (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모든 수입금은 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함 -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하여 발급된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분기마다 보고하지 않아 신고 누락 - 구입한 기자재, 비품, 도서 등을 물품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 ※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나 비품, 도서 등을 대학 본부 물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하고, 관리기관이나 집행기관은 ERP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함
기타	- 연구비 카드 부당 사용 - 주류판매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 회의를 교내에서 개최하면서 카드결제는 타 지역에서 사용 - 연구(용역)계약을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 수행기관 명의로 직접 체결 ※ 연구(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하여야 함. 2개의 보직을 갖고 있는 교수에게 일반회계에서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보직수행경비를 추가 지급

2부



연구비 관리 및 운영안내

연구비 개요

연구비 유형별 구분 기준

구분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R&D)	용역사업(일반용역)
사업 목적	과학기술 진흥, 신기술 개발 등의 공익적 목적	특정 과업의 결과물 도출 등 발주자의 목적 달성
결과물 소유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 귀속	계약 조건에 따름
회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위법령) - 각 부처별 규정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 지원기관 내부 지침
전문기관(예시)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원칙으로, 재단에서 지원한 과제 외 연구비에도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권고사항임

번호	원칙	내용
1	연구계획 확인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 계획에 근거하여 계상·집행 ②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 ③ 연구기간(협약기간) 동안에만 사용
2	관련 규정 준수	①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집행 ②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름
3	사용 내역 입증	①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 ②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구비
4	이해충돌 회피	①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 ② 연구개발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

연구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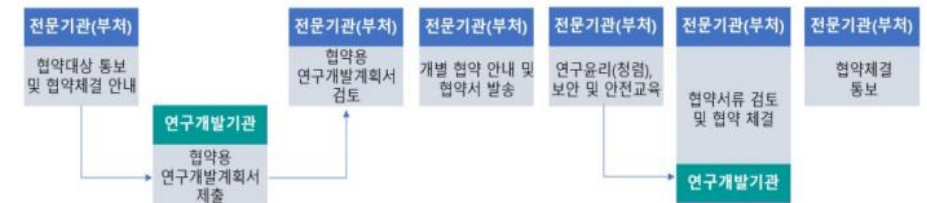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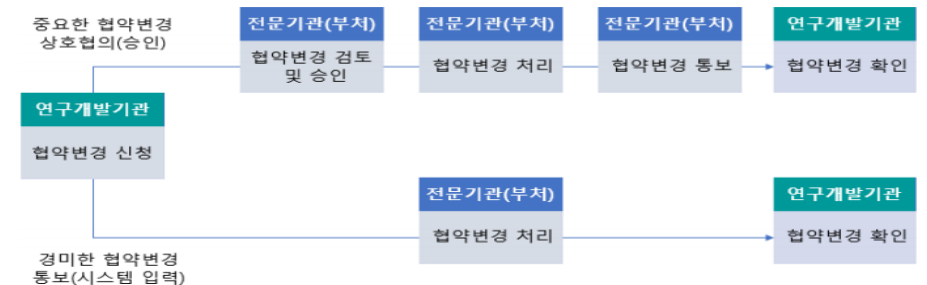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¹⁾

협약 체결 절차²⁾



협약 변경 절차³⁾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 p.1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 p.6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 p.73

연구비 개요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내부거래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예외 (계상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연구비 개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요약본

구분	항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 연구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투입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급여 - 정규직, 계약직, 외부 연구원 모두 포함 - 인건비 지급 기준은 기관 규정을 따르며, 허위 인건비 청구는 부당집행에 해당
	학생인건비	- 대학원생 및 학부생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 인건비 계좌로 직접 지급원칙 - 학적 상태(휴학생, 졸업생 등) 확인 필요
	연구시설·장비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 구입, 설치, 임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연구재료비	- 실험, 연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시약, 부품, 재료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개발비	- 과제의 일부를 외부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외국 기관, 연구자와 공동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출장비, 공동연구비 등)
	연구활동비	- 회의비(회의 목적·참석자 명시), 출장비(공식 출장만 인정) - 외부전문가 활용비,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를 위한 비용 - 단, 접대비, 사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음
	연구수당	- 과제 결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수당

연구비 개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요약

구분	항목	사용용도
간접비	기관 공통 경비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유지비, 전산망 사용료, 공공요금 등 -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간접 비용으로 별도 관리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 연구비 관리, 정산, 감사 대응 등을 수행하는 전담 행정 인력의 인건비 - 연구참여자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관리운영비	- 연구비 정산업무, 회계처리, 외부 감사 준비, 연구비 관련 시스템 운영비 등 - 연구개발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필수 지원 업무에 사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 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함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
-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해서만 구매 가능함

연구비 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는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의 조항이 혁신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협약 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연구비 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

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다른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함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260-01목)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해당
 - 이 유형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기관 내규 적용
- ②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제2호)
 -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
 - 이 유형의 사업은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부에서 국제기구(예 : OECD)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협정·조약 또는 해당 국제기구 등의 규정에 따름
- ③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혁신법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름
- ④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제4호)
 -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
 - 정책연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이에 근거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혁신법 제1장, 제3장~제5장을 따름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기관 내규에 따름

연구비 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

-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제5호)
 - 기획·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2021년 예산부터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로 편성
- ⑥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제6호)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의미
- ⑦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과기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실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을 적용



1.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R&D 성격인 사업은 혁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R&D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비R&D 성격인 사업도 혁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1.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은 아님
 - 해당 사업 운영 시 혁신법의 절차나 서식을 준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혁신법에 따른 처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2.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R&D 성격인 사업이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임

연구비 규정 안내

 부처별 훈령·예규·지침(상위 근거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정부부처	세부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부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제재처분

연구비 부당집행

✻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액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 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을 한 직접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의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 총 인건비계상율 100% 초과 계상 (비영리기관) -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지급한 금액 - 직접비,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지급 된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외부	- 원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 한 금액 -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 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에게 지급 된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총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 장비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 (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 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연구장비에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비 부담집행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구분	부담집행 기준
연구활동비	출장비 -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회의비 - 사전 내부결재 없이 집행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4항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외부 전문가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자문료, 감사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 참여연구원 지급불가, 내부는 연구실단위로 지급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①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기관)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활용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 단위를 입증 시 계상가능 -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연구비 부담집행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구분	부담집행 기준
연구활동비	연구인력 지원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그 밖의 비용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기관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그 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재료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작품의 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비 부담집행

❖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1.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 연구수당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연구비 부담집행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기간은?



1.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 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2.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연구비 부담집행

연구활동비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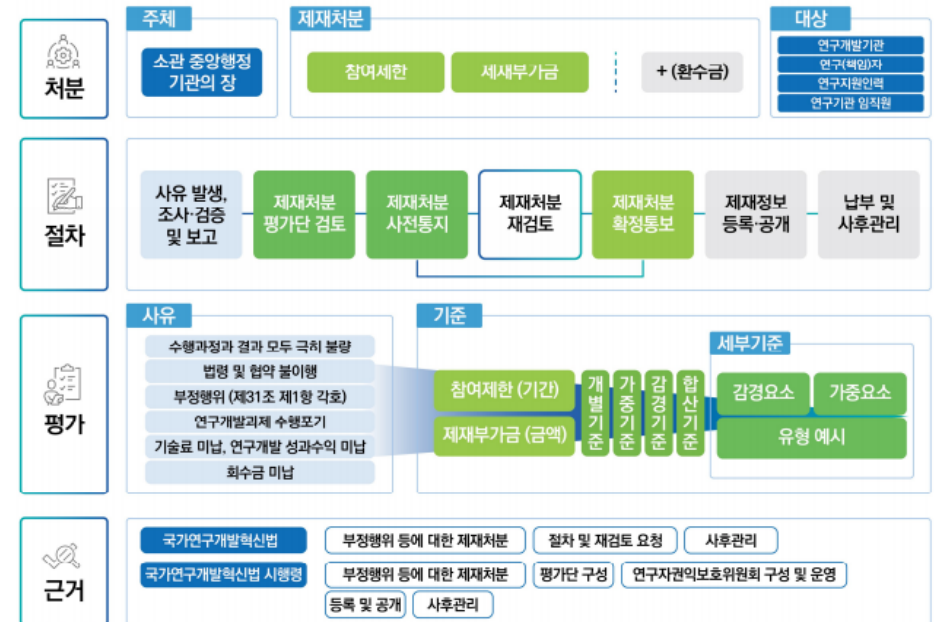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1.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고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2.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¹⁾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법적근거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63조에 기반
-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처분 사유와 대상자, 유형과 시효 등을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절차, 재검토 요청,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제정
- ③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제재처분 기준이나 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등을 규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4.04.)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용어

용어	정의
제재처분 주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32조제1항)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다만 혁신법에 따라 일부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대상자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법 제32조제1항) -제재처분 대상자 결정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해야함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 제2조제1호)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법 제2조제2호)
참여제한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법 제3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참여 및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등에도 참여활동 제한됨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용어

용어	정의
제재부가금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법 제3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4조제2항)
연구개발비 회수금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내 실시되는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각호)
연구개발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 (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금액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부를 반납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수금으로 책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는 현금 환수를 원칙 으로 함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용어

용어

정의

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외 유출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용어

용어	정의			
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table border="1"> <tr> <td>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td><td>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td></tr> <tr> <td>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td><td> 포괄규정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td></tr> </table>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괄규정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A기관의 부설연구원)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A기관과 그 외 부설기관들도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는 바, 해당 부설 연구원이 A기관과 독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수행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A기관 또는 다른 부설기관들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 내용

01 제재처분 적용범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3조 각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 예산 중 일부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서 연구개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
 -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과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함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혁신법 제재처분 규정을 적용

02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제재처분은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제척기간의 기산점) ①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과 ②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 중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제척기간은 만료됨
-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제재처분의 확정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재처분은 불가함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 내용

03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등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 종전의 '연구결과 불량'은 혁신법 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의 극히 불량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 종전의 '연구비용도 위반'은 혁신법에서 연구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모두의 위반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제재처분 사유의 추가)

- 혁신법에서는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별도로 명시
- 혁신법에서는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 보고 등 제재처분 사유 신설

(제재처분 사유의 제외)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은 제재처분 사유에서 제외됨
 - ※ 혁신법에서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의 경우는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0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조정

제재처분이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의미함

-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대상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2조제1항)
- 참여제한 기간이 과세별로 10년(과학기술기본법 상 5년 이내)이내의 범위로 상향되었으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으로 활동 등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목) 전반에 대해 참여가 제한됨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유사하지만 제재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 함

연구비 제재처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 내용

05 제재처분의 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 (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06 제재처분 공개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이 중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 62조)
-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간 공개**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조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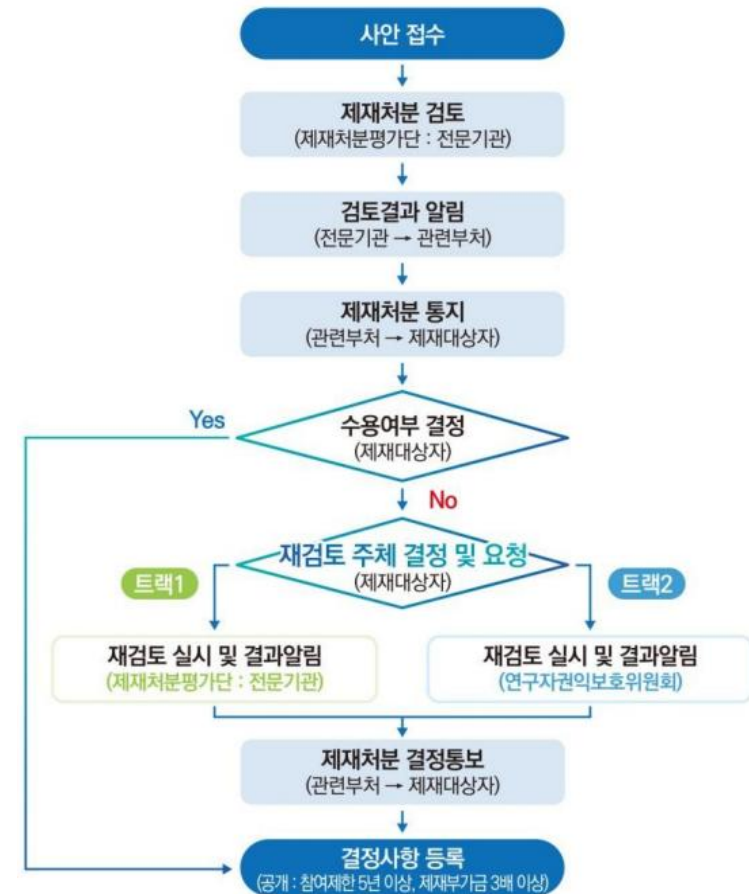
혁신법 제34조에서 "(연구지원은 제외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연구지원' 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연구비 제재처분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제재처분 절차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4.04.)

연구비 제재처분 절차

제재처분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검증 및 보고

01 부정행위의 경우(법 제31조제2항 각호 규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조사·검증 할 수 있음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1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호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호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호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02 그 외의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 2호 및 제4~6호)

-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이외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 하는 사안은 조사·검증 없더라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부정행위(법 제31조제1항) 외의 제재처분 사유(법 제32조제1항)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 제재처분 절차

제재처분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검증 및 보고

03 제재처분 사전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 (법 제33조제2항 각호)**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함

0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조정

-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제33조제3항)**

05 확정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함(법 제33조제5항~6항)**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

06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 하여야 함(시행령 제63조제1항)**
※ 처분대상자가 소멸한 경우, 해당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직권으로 면제(취소)함이 타당함

부록

부록
규정 및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부록

↓ 관련규정

규정명	관리부서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지침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센터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연구물품 등의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연구비카드 관리지침	산학협력단	

부록

☎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

📌 제보내용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산학협력 사업비의 부당한 사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유용한 연구비를 회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보방법 및 수단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별지서식] 따라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051-510-1376

✉ gamsa@pusan.ac.kr

📍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509호 연구윤리센터

※ 제보서식 다운로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 > 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센터 >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서 다운로드



부산대학교

2024

연구비감사사례집

- 발행부서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 발행일자 2024년 12월
- 전화 051-510-7981,1376

